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내규

2019. 05. 07.

정 치 전 문 대 학 원

1. 정치전문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치전문대학원입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전공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입학정원배정) 입학정원배정은 입학 당해 연도 입학지원과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공별 학사운영 및 최소 수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입학) ① 국내·외 대학원에 재적 또는 수료한 자가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전공에 한하여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전공주임교수가 지원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18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인정된 전적 대학원의 학점에 따라 대학원장은 편입학 학기를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5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 학기에 한하여 2회까지 허용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허가한다. (개정 2018. 11. 13.)
③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 자퇴자 중에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 30일 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학기에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삽입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 (신입생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결정된다.

제7조 (입학지원인원제한) 박사과정은 입학 지원 1인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제5조 (입학전형) ① 정치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면접전형은 각 학과 교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단, 대학원장 승인 하에 학과별 면접 일시, 장소, 방법은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0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7조(입학지원인원제한)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전기 입시부터 시행한다.

2. 정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등록 및 학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장에서 정한 등록 및 학적사항에 관한 세부시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의 종류)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의 수료학점을 위한 등록
2. 입학·편입학·재입학등록: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위한 등록
3. 학점등록: 정규등록 학기 이후 수료학점취득을 위한 등록
4. 연구등록: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논문연구 등록

제3조 (연구등록)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③ 학칙시행세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각 과정별 학위청구논문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의 학위 논문 제출 자격부여 여부는 해당 전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2개 학기 이상, 논문 통과시 까지 연구등록을 하고 논문지도교수를 받아야 하며, 2번째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금은 총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당해학년도 등록금의 10%를 책정하여 시행한다.

⑤ 연구 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제4조 (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균 휴학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①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 ② 미등록자
-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자
- ④ 등록 후 미수강 신청자
- ⑤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2.0 미만인 자

제7조 (전공의 변경) ①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을 등록 수강하고 변경 전 전공과 변경예정 전공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 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고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정치전문대학원 교과수정·수강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치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및 수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필수과목 및 학점) 각 학위과정별로 지정한 공통선택 과목과 전공별 전공선택 과목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공통선택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은 종합시험 과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박사과정은 60학점(석사 24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4학기·박사6학기는 논문 학기로 수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선수과목) 박사과정 입학자 중 석사과정 비전공자를 위한 선수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선행이수) ①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박사학위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선행이수자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그 선행이수학점을 박사과정 졸업소요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포함여부의 결정은 선행이수자가 박사과정 제5학기 등록을 필한 때에 한 한다.

제6조 (폐강기준) 수강신청 인원이 5인 이하(박사과정은 1인 이하)인 강좌는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타 학과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을 석사 3과목(9학점) 박사 5과목(15학점) 이내에 수강할 수 있다.

제8조 (집중이수제)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의2(수업) 및 제 17조의3(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시간)에 의거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및 내규 규정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기타) 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국방대학교와의 학술교류·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대학교(이하‘국방대’라고 함)와의 학술교류·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점인정) 국방대 석·박사 학위과정 수료자 및 재학 중인 자가 본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제3조 (학비감면) 국방대 안보과정, 합동참모과정,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및 졸업자는 본 대학원 학비감면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4조 (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의 작성 및 심사,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석사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양교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학사관리) 국방대와의 협약에 따라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모든 학사업무는 본 대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협의회) 양 교의 교류협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 교류협력관과 본 대학원 교학팀이 주무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타)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내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5. 정치전문대학원 조기졸업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조기졸업은 대학원 학칙 제24조 및 제32조의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허용하되 다음과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1. 국방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간의 학점인정 협약서에 의거하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또는 안보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2개 학기 총 평점 평균이 A학점(4.0)이상인 석사과정 재학 중인 자 (개정 2018.12.26.)

2. 박사과정은 5학기 까지 수료에 필요한 모든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이 인정 된 자 (개정 2018.12.26.)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없다.

1. Pass/N(Not pass) 교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기가 있는 자

2.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신청시기와 절차) 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하는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사정절차) ① 조기졸업 사정은 일반졸업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통합하여 행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원 학칙 제28조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2학기 말에 합격하여야 하고, 제29조의 논문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학기를 3학기에서 2학기로 1개 학기 단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박사학위논문 공개 발표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예비공개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박사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예정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지도교수의 논문발표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다만 6학기생 및 미발표 수료자는 공개발표와 동시에 당해학기 중 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방법) 예비공개발표 대상자 중 지도교수의 발표허가를 득한 자는 발표일 7일전까지 요약 발표문 3부를 교학과를 통해 심사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박사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심사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담당한다.

제5조 (통과) 심사위원별 합격점은 전체항목의 3/4을 '가'로 인정하고 참석위원 3/4의 합격점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연구논문발표)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위과정 중에 공인학술지 또는 대학원 논문집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구 학칙 시행내규를 적용한다.

7. 정치전문대학원 외국인 정원 외 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9조(외국인학생) 입학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자격) 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②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④ ②③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국에서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였거나 공인된 한국어 능력시험을 4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국내의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를 1년 이상 수강하여 한국어 수강능력이 가능한 자, 또는 일정수준의 영어성적 보유자(지원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입학)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① 외국인 정원 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 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학점이수) ① 외국인의 석·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이수는 대학원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에 대학원내 수강으로 하고, 해외거주자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현지교육 및 원격강의 수강을 인정한다.

제5조 (특별장학생) 외국인 정원 외 입학자 중 본 대학원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 한기 전액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정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장학금 및 학비감면에 관한 내규 (개정 2018.11.13.)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0조(장학금)에 따라 정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장학금 지급 및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장학금 종류와 수액)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적장학금 : (A) 2,000,000원, (B) 1,000,000원
2. 공로장학금 : (A) 1,000,000원, (B) 500,000원
3. 동문장학금 : 경기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등록금의 20%를 석사과정 1학기 및 2학기에 지급한다. (2회 지급)
4. 학비감면장학금 :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장학금(학비감면)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학금액은 본 대학원 장학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공로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제3조 (학비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학비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군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재직자
2.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연구소 재직자, 유관기관종사자
3. 경기도의회 의원
4.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안보과정 졸업자 및 재학생
5. 학·군 교류 협약에 의해 정원 외로 입학한 군 추천 위탁생
6. 본교 교직원 및 자녀
7. 외국인 유학생 : 입학한 외국인 중 TOPIK 4급 이상인 경우 (개정2018.05.15.)(개정2018.07.24.)
8. 새터민(북한이탈주민)

② 학비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학비감면 대상자	과정	감면율	증빙서류
군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재직자	석·박사	20%	재직증명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구소재직자, 언론사, 유사기관 및 유사업무 종사자	석·박사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증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안보과정 졸업자	석·박사	25%	졸업증명
외국인 유학생(TOPIK 4급 이상)	석·박사	30%	외국인등록증, 토픽성적표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안보과정 재학생	석사	50%	재학증명
학·군 교류협약에 의한 정원외로 입학한 군 추천 위탁생	석사		추천서
경기도의회 의원(3명이내, 최대50%)	석사		재직증명
본교교직원	석·박사		재직증명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석·박사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본교교직원 자녀	석사	전액	재직증명

- ③ 학비감면 대상자는 소정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 발행본)
(개정2018.09.11.)
- ④ 본 대학원과 MOU 협정을 통해 학비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는 학비감면율을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특별장학금)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 제3조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 1. 성적장학금 : 전공별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2. 공로장학금 : 원장이 추천하는 원우회 임원 및 대학원 발전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3. 동문장학금 : 경기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4. 학비감면장학금 :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의 학비감면 및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① 학비감면 대상자 및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점 미만인 경우 추천을 취소한다.
- ② 학비감면 대상자는 당해 학기를 미등록 휴학할 경우 추천을 취소한다.
- ③ 성적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학비감면 장학생은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3조 2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내규 3조 4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내규는 교육국제화인증과 관련하여 외국인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내규는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외국인 재학생은 입학 당시의 장학금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충청로 평화포럼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명칭) 본 연구모임의 명칭은 “충청로평화포럼”(이하 ‘포럼’이라함)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남북한의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외 학술이론 연구조사와 정치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그리고 통일·안보 관계자간의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남북한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개발 및 학술회의
- ② 대학원 동문간의 학술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 ③ 국내외 통일안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 사업 추진
- ④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조직) 본 포럼은 책임교수, 운영위원회, 통일정책분과, 안보정책분과를 두어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 (회원) 본 포럼의 회원은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 졸업생 및 재학생 또는 통일안보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

제6조 (책임교수) 책임교수는 연구관련 조사 및 수행 등의 연구기획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연구협력 업무를 기획하며 통일정책분과, 안보정책분과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7조 (통일정책분과) 통일정책분과는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제8조 (안보정책분과) 안보정책분과는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책임교수, 분과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포럼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며 1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구성 및 임기) ① 책임교수 1인, 분과위원장 각 1인,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 책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③ 분과위원장과 운영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내외 인사 중 통일안보연구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책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대내외적으로 포럼의 입장을 대변한다.

② 책임교수는 본 포럼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각 분과의 위원장은 해당 실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실의 상호 원활한 소통을 주관한다.
- ④ 운영위원은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12조 (기타 인원) 본 포럼에는 연구위원, 연구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책임교수 또는 분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원은 본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외부 전문 연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책임교수 또는 분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관련 학칙에 준한다.

10.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치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구성) ①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중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③ 대학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의장)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의안에 관한 위임장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정치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①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졸업생,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합동운영위원회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 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교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비전임 교원 및 외부 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용 및 해촉은 합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2018.12.26.)

제6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명칭) 특별과정은 정치전문대학원 정경아카데미 (이하“정경아카데미”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정경아카데미는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정경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 인재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정경아카데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경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운영
2. “보좌진 및 정치컨설턴트 육성과정” 운영
3. “사회적 경제전문가 과정” 운영
4.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5. 사회 각 분야의 인재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6.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에 대한 정치교육과정 운영
7. 일반인 및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8. 기타 정경아카데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조직) 정경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 및 직원을 둔다.

1. 원장: 2명 이내
2. 부원장: 약간명
3. 주임교수: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조교: 약간명

제6조 (임명) ① 정경아카데미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졸업생, 외부인사 중에서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주임교수 중에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직무) ① 원장은 정치아카데미를 대표하며 아카데미의 관리 및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 중 연장자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주임교수는 학생 관리, 강의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처장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조교는 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제반 지원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직원 등) ① 사무처에는 정경아카데미에 필요한 경우 직원 및 기타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요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정경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경아카데미의 각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경아카데미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경아카데미의 규정, 운영세칙 및 기타사항에 대한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경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 (자문위원회) ① 정경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등은 각 세부특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납입금) ① 교육과정의 수강생은 등록 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 및 반환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세부특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수료증 및 졸업증 수여) 각 세부특별과정별로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수료 및 졸업기준은 각 세부특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재정) 정경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 수입
2. 찬조금 및 교내외 기타 보조금
3. 국내외 위탁교육비 등

제15조 (회계연도 및 사업보고) ① 정경아카데미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와 같이 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익년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치전문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1월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타)** ① 정경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세부특별과정의 학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치전문대학원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정치, 외교, 국방, 남북관계 및 행정 분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경기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예견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3조 (운영)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정치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 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신설 2019.05.0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7조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응시방법)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응시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한다.

제4조 (외국어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외국어시험 합격인정) 외국어시험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 면제)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어시험 출제위원) 외국어시험 문제는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원(전임 및 비전임)이 출제한다.

제9조 (외국어시험 감독위원) 외국어시험 감독은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원 및 교직원이 실시하며 오픈북을 허용한다.

제10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② 박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11조 (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종합시험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종합시험 감독위원) 종합시험 감독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원 및 교직원이 실시하며 오픈북을 허용한다.

제15조 (종합시험 합격인정)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평가방법) 종합시험 평가방법은 대학원장과 출제 담당 교·강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